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반부패 추진시책

2017. 4月

목 차

I . ‘17년 청렴 정책 추진의 여건과 전망	1
II . 추진 전략	2
III .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
1. 청렴생태계 조성	3
2. 부패위험 제거 · 개선	5
3.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활성화	8
4. 청렴문화 정착	10
붙임. 부서별 협조 사항	13

I. '17년 청렴 정책 추진의 여건과 전망

□ 대외환경

- 전년도 대내·외 국가 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평가 급락으로 대외 신인도 저해 우려
 - * ex)국제투명성기구의 '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53점(↓3점) 52위(↓15위)
- '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대형 부패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관행적 부패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증대
- 조기대선 및 새정부 출범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대내환경

- 예산총액 증가·신규 사업 추진 등 기관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부조리 및 비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내부통제 기능 활성화 필요
 - * 예산총액 증가: 300억원(2015년)→ 329억원(2016년)→ 347억원(2017년)
- '16년도 미래부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V등급
 - (주요 미흡사항) 주요정책 감사부서 참여,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실적,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실적 등

□ 추진목표 및 방향

-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 환기
 - 반부패·청렴업무 전담부서 지정(감사실) 및 인원(1명) 배치 완료(2월)
 - 청렴마일리지 등을 활용한 전부서 참여 촉진
- 2017년을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청렴 원년”으로 삼아 주요 추진과제 발굴 및 추진

II. 추진 전략

목표

윤리경영 실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토대 구축

10개 추진과제(25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방향

1. 청렴생태계 조성

2. 부패위험 제거·개선

3.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활성화

4. 청렴문화 정착

추진과제

- 청렴 정책 참여 확대
- 청렴 거버넌스 구축

- 권고과제 및 자율과제 추진
-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 행정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내실화
-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 일상에서의 청렴문화 확산
- 청렴교육 내실화
-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Ⅲ.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청렴생태계 조성

- ▶ 반부패·청렴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 ▶ 규정 제·개정 절차 및 각종 위원회 등에 청렴부서가 참여함으로써 기관 업무 수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 ▶ 기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진 외부 전문가가 감시·평가하도록 하여 관련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내·외부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 거버넌스 구축

① 청렴 정책 참여 확대

- **감사·부패방지 업무역량 강화(감사규정 개정)**
 -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감사관련 전문교육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3년 이상 근속 명문화
 -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해외연수·포상 등 인센티브 명문화
- **부패영향평가 제도 신규 도입**
 - 학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 기존 학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학규 제정 시 감사부서의 사전 부패영향평가 절차 의무화
- **각종 위원회 감사부서장 참여 명문화**
 - 인사위원회·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또는 평가에 감사부서장 참여 명문화

② 청렴 거버넌스 구축

□ 청렴 옴부즈만 운영

- 2016년도 「청렴옴부즈만운영규정」 제정 및 위촉 완료
- 옴부즈만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 등 회의 운영(연 4회 이상)
 - (반부패 청렴활동) 부패방지시책 수립·운영 자문, 부서별 반부패 자율시책 평가,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수행
 - (감사활동 참여) 자체감사 참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활용

□ 청렴 마일리지 제도 신규 도입·운영

- 기관 내부 구성원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 교직원 개인과 별도로 부서별 청렴 마일리지 부여
 - 부서별 담당 업무 관련 반부패 자율시책 발굴 요청(3월) → 각 시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서 청렴 마일리지에 반영(11월)
 - 연말 청렴 마일리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실시 예정

세부정책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감사규정 개정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각종 위원회 감사부서장 참여					연중
청렴 옴부즈만 운영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2. 부패위험 제거·개선

-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준수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자율적 반부패과제 추진
- ▶ 부패행위 및 그 밖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상화하는 한편, 부패행위 자체 적발을 위한 노력 강화
- ▶ 정부 3.0에 따른 자발적인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행정 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① 권고과제 및 자율과제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공통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용 (평가대상과제 별도 통보/미래부)
 - 수용 권고과제 이행 완료 추진(10월 이전)
- **신입생 입학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도입**
 - 1차전형(서류심사) 및 2차전형(심층면접) 심사위원 서약서 징구
 - * 입학전형 관리업무 수행 교직원의 경우에도 서약서 징구 추진
 - 서약서 서식에 심사위원 제척사유 명시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연구비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UST 외국인 학생이 국가 R&D사업 연구비 부정사용 사실을 인지한 경우, 우리말이 서툴러 신고가 어려운 문제 해결
 - 카카오톡 옐로페이지로 “온라인 연구비 부정 신고센터” 개설
 - 홈페이지 배너, 외국인유학생회 SNS그룹계정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고접수 사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공조 하에 사실 확인 및 처리

②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 징계 관련 규정 정비(교직원징계요령 개정)
 - '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미래부 산하기관 징계규정 표준(안)” 중 일부 조항 미반영
 - * 표준(안) 제1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 조항
 - 해당 조항을 모두 반영하여 징계 관련 규정 정비 완료 추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수시 실시(5회 이상)
 - 명절, 연휴, 선거기간 등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중점 실시 추진
 - 부패행위 적발 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감경 없는 징계 처분

③ 행정 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 기관운영자료 공개 확대
 - 부서별 담당 기관운영자료 작성 및 공개/청렴부서 총괄 모니터링
 -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현황, 수입 및 지출현황 등 기관현황자료
 -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사용 양식 활용
 - 중장기 경영계획, 경영성과계획서, 국외출장보고서 등 기관경영자료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수의계약 현황 공개 확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 건별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공개
 - 수의계약 현황: 계약금액 무관 전체 공개

□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운영

- e-감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을 통한 부정행위 사전 예방
 -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 사례를 참조하여 e-감사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 → 시스템 활용성 제고

세부정책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입학전형별 위원 서약서 징구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비 부정 신고센터 개설					
징계 관련 규정 정비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연중
기관운영자료 공개 확대					
업추비·수의계약 공개 확대					매월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활성화

- ▶ 2016년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규정이 공직사회에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노력 강화

①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내실화

□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기준 마련(교직원징계요령 또는 행동강령 개정)

- 위반행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무원에 적용되는 현행 징계양정기준 등 참조

*참고자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 부정청탁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제공

- 청탁금지법 FAQ 게시판 개설: 청탁금지법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자료 등 수시로 게시하여 업무상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
-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등

-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청탁금지법 해설 교육 포함 실시(연 2회)
 - 교육 시행 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수령
- 청탁금지법 퀴즈대회 개최

②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현재 감사실장이 청탁금지법담당관으로 지정·활동 중
 -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규정 제정 추진
 - 각 정부 부처에서 제정·시행 중인 해당 예규 등 준용
- * ex)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세부정책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제공					연중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등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4. 청렴문화 정착

- ▶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일상 업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청렴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교육 내실화
-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① 일상에서의 청렴문화 확산

□ 보직자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권익위 표준모형에 따른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를 통한 부패위험 요인 발굴·개선 및 청렴 리더십 고취
- 진단대상: 전(全) 보직자
- 진단범위: 조직환경·업무환경·개인별 청렴도
- 결과공개: 진단결과 공개를 통하여 향후 중점 개선사항 공유(개인별 청렴도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기관장 보고)

□ UST 청렴주간(가칭) 실시

- 일상적 청렴활동과 별개로 특별 청렴프로그램 집중 실시를 통해 반부패·청렴에 대한 교직원 의식 제고 효과 기대
 - 청렴교육(청탁금지법 교육 병행), 부패위험성 진단, 청탁금지법 퀴즈대회, 행동강령 준수실태 집중 점검, 보직자 청렴 워크숍 등

□ 청렴주의보 발령

- 명절, 연휴, 여름휴가철,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한 경각심 고취
 - 전 교직원 SMS 발송, 사내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활용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협조(인사규정 개정)

- 「인사규정」에 임용결격사유로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반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16년도 개정사항 반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협조
- * (비위면직자) ①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②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 채용전형 진행 시 채용공고문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명시
-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② 청렴교육 내실화

□ 보직자 청렴워크숍 추진

- 총장 이하 전(全) 보직자 대상 청렴워크숍 실시(5월)
 - 청렴유적지 방문, 집합교육(청탁금지법) 실시, 청렴서약서 작성 등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보직자 청렴리더십 고취

□ 전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제도, 청렴소양 등
- 교육방법: 전문교육기관 입과,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병행
 - 집합교육 3회(각 2시간) 이상 실시
 - * 집합교육 이수 실적 미흡한 교직원에 대하여 사이버교육 입과 추진
 - * 집합교육 시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전문강사 우선 활용
-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개인별·부서별 청렴마일리지와 연계하여 교육 참여 동기 부여(향후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추진)

③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 신고시스템 정비

- (외부 신고) 기관 홈페이지에 R&D부정비리신고 센터(미래부), 청렴신문고(권익위/부패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복지·부조금 부정신고, 공익신고 등) 상시 배너 설치·연계
 - 각 신고 항목별 신고대상을 구분하여 안내하되 신고 메뉴는 단순화하여 신고자의 편의성 제고
- (자체 신고) '감사실 핫라인(가칭)' 신규 설치 및 운영
 - 기명신고시스템과 더불어 무기명제보시스템 신규 도입을 통해 자체 신고 활성화 도모
- 신고대상,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등 안내 실시

□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추진
 - 신고의무, 조사·처리 절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규정

세부정책 추진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보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UST 청렴주간 실시		■			
청렴주의보 발령	■	■	■	■	연중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반영		■	■		
보직자 청렴워크숍 추진		■			
전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	■	■	■	연중
신고시스템 정비		■	■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	■		

붙임

부서별 협조사항

협 조사 항		총괄부서	관련부서
1. 청렴생태계 조성			
① 청렴 정책 참여 확대			
①	감사·부패방지 업무역량 강화(감사규정 개정)	감사실	기획예산팀
②	부패영향평가 제도 신규 도입	”	기획예산팀
③	각종 위원회 감사부서장 참여 명문화	”	해당 부서
② 청렴 거버넌스 구축			
①	청렴 옴부즈만 운영	감사실	
②	청렴 마일리지 제도 신규 도입·운영	”	
2. 부패위험 제거·개선			
① 권고과제 및 자율과제 추진			
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감사실	해당 부서
②	입학전형별 위원 서약서 징구	학생팀	
③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비 부정 신고센터 개설	국제 학생팀	
②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①	징계 관련 규정 정비(교직원징계요령 개정)	감사실	경영지원팀
②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	
③ 행정 투명성 및 정책 신뢰성 제고			
①	기관운영자료 공개 확대	감사실	해당 부서
②	업추비 사용내역·수의계약 현황 공개 확대	”	해당 부서
③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운영	”	인프라운영팀

협 조 사 항		총괄부서	관련부서
3.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활성화			
①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내실화			
①	청탁금지법 위반 징계기준 마련	감사실	경영지원팀
②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제공	"	
③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	
②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감사실	기획예산팀
4. 청렴문화 정착			
① 일상에서의 청렴문화 확산			
①	보직자 대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감사실	
②	UST 청렴주간(가칭) 실시	"	전 부서
③	청렴주의보 발령	"	
④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협조	"	경영지원팀
② 청렴교육 내실화			
①	보직자 청렴워크숍 추진	감사실	
②	전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경영지원팀
③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①	신고시스템 정비	감사실	인프라운영팀
②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	기획예산팀